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입업정보용)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체 등록번호		
	성명(법인명·대표자명)		
제출 증명 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 기존에 등록한 사항(왼쪽란)에 대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변경신청 내용(오른쪽란)'에 기입합니다.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유의사항

-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 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는 등록·변경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업현황과 관련한 소재지의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 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임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 사업관리시스템
농업(임업)용 면세유류의 유형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관리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데 동의합니다.

-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 법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와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청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	----	---	---------	---	--------

신청인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